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0. 4. 20.] [고용노동부령 제251호, 2019. 4. 19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 이유】

제정·개정문

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입환기(入換機)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·충돌·협착 등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폐질 환 등의 발생 원인으로 확인된 인동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고용노동부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

제정·개정이유

전체 제정·개정문

◎ 고용노동부령 제251호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4월 19일

고용노동부장관 (인)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4항 본문 중 "간이 리프트의 운반구"를 "자동차정비용 리프트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간이"를 "자동차정비용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"화물용 승강기"를 "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승강기"를 "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"로 한다.

제13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승강기

제132조제2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간이리프트: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.2미터 이하인 것 또는"을 "자동차정비용 리프트:"로, "자동차정비용 리프트"를 "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"승강기"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승객용 엘리베이터: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·설치된 엘리베이터

나.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: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·설치된 엘리베이터

다. 화물용 엘리베이터: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·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(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)

라.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: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·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

마. 에스컬레이터: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·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

제1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리프트

제151조 중 "간이"를 "자동차정비용"으로 한다.

제4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사업주는 입환기(入換機)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열차운행 중에 열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알릴 것
- 2.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
- 3.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
- 4.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. 다만, 열차의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받침과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449조제2항 중 "별표 12 제1호 카목·토목·수목·르목·자목·머목"을 "별표 12 제1호카목·호목·추목·스목·파목·저목"으로 한다.

별표 3 제6호 중 "간이리프트"를 "자동차정비용 리프트"로 한다.

별표 12 제1호저목부터 묘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묘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묘목(종전의 묘목) 중 "묘목"을 "묘목"으로 한다.

저. 1,2-디클로로프로판(특별관리물질)

별표 12 제2호너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커목(종전의 처목) 중 "저목"을 "처목"으로 한다.

너. 인듐 및 그 화합물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리프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와 간이리프트(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)는 제86조제4항, 제132조제2항제3호, 제134조제1항제3호·제4호, 제151조 및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제13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규정) 별표 12 제1호저목 및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저목 또는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, 제423조제3항, 제424조제3항, 제431조, 제432조, 제434조, 제435조,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